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22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서영교의원 등 12인
2. 제 출 일: 2026. 3. 4.
3. 회 부 일: 2026. 3.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한편 최근 외국인에 대한 인신매매,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외국인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현재 법무부가 외국인 인권보호와 체류 허가 등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법무부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35조의3).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5조의3(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u>1. 인신매매, 임금 체불 등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이 법에 따른 허가 등에 관한 사항</u> <u>2. 인도적 사유가 있어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이 법에 따른 허가 등에 관한 사항</u> <u>3.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u>

	<u>4. 그 밖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설치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심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개정안은 임금 체불, 인도적인 사유로 출국이 곤란한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현행법상 허가¹⁾ 등에 관한 사항,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한 자문기구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신설하려는 것임.

법무부는 「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²⁾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지침」을 통해 2006년 1월부터 외국인 고충 사항 해결, 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협의회를 발족시켜

1)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에 대해 입국·재입국·조건부입국 허가, 관광상륙허가, 난민 임시상륙허가, 보호기간 연장 허가 등 다양한 형태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음.

2)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13조 (특별분과위원회) ① 법무행정 중 특정분야의 사항에 관한 연구, 협의, 심의 및 법무부장관에 대한 자문 등을 담당할 특별분과위원회로 ‘법무시설건축협의회’, ‘수용자급식관리위원회’, ‘외국인·동포인권보호및권익증진협의회’, ‘기술자문위원회’를 위원회와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관 실·국·본부의 업무지침으로 정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협의회와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구성]

구 분		세부 내용
중앙 협의회	위원장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정부위원	- 내부 : 국적·통합정책단장, 인권정책과 서기관 - 외부 :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민간위원	- 변호사, 교수, 종교인, 시민단체 구성원 등 외국인 인권보호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 (※ 임기 2년, 연임 가능)
	중앙협의회 위원 정원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지방 협의회	위원장	-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정부위원	- 내부 : 조사(사범)과장 - 외부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지방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근로복지공단 지부
	민간위원	- 변호사, 교수, 종교인, 시민단체 임원 그 밖에 외국인 관련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으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청사무소장이 위촉 (※ 임기 2년, 연임 가능)
	지방협의회 위원 정원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청 10~12명, 사무소 및 보호소 8~10명의 위원으로 구성 ※ 기관별 사정을 고려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구성	

최근 5년간 협의회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중앙협의회는 연평균 3.8건 가량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1.6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2025년 들어 개최실적이 평년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협의회는 연평균 20건 가량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29.4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중앙협의회 운영현황]

(단위: 건)

구 분	합 계	연평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개 최	8	1.60	1	1	1	1	4
안 건	19	3.80	2	3	3	3	8

[최근 5년간 지방협의회 운영현황]

(단위: 건)

구 분	합 계	연평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개 최	100	20.00	40	17	6	19	18
안 건	147	29.40	53	28	7	28	31

[중앙·지방협의회 심의 사례]

- ① ('25. 6월 중앙협의회)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의 체류지원 방안
⇒ 협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유효한 여권이 없는 무국적 동포들에게 방문동거(F-1-1) 자격변경 및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② ('25. 12월 중앙협의회) 국제정세 불안으로 귀국이 어려운 동포들의 체류 지원 방안
⇒ 협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동포들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 ③ ('26. 1월 인천협의회) 항암 치료 중인 자녀를 양육 중인 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허용 여부
⇒ 협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의 항암치료를 위하여 입국한 몽골 국적 외국인의 경제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④ ('26. 3월 광주협의회) 임금 착취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필리핀 계절근로자 체류 지원 방안
⇒ 협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 착취, 강제 노동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필리핀 계절근로자(E-8)의 체류자격 변경 및 근무처 변경 허가

개정안은 현재 지침으로 운영 중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설치·운영근거를 법률에 상향시키려는 것으로서, 협의회는 법적

근거 명확성 및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협의회 운영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도모하여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존재함.

특히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다부처 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협의회 근거의 법정화에 따른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의 보다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아울러 법무부가 그간 지침으로 운영해 온 협의회 운영실적에는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에 대한 심의 사례들도 존재하는 만큼³⁾,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권익 향상에 관한 기본 정책을 추진하는 재외동포청⁴⁾과 외교관계 및 영사업무를 총괄하는 외교부⁵⁾ 등 협의회 근거 규정 상향화에 맞춰 참여 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의견 수

3) 앞서 살펴본 [중앙·지방협의회 심의 사례] ①, ② 사례 참조

4)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외동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라.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국민과의 교육·문화·경제·사회 등 교류활동 및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④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재외동포정책의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이하 생략)

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영사안전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재외동포청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재외동포는 제외한다)의 입국사증에 관한 업무

럼을 통한 자문기관의 역량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안 제25조의3제2항은 협의회 심의사항을 규정하면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지침」 내용 중 일부만을 법률로 상향하여 중앙협의회와 지방협의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현행 지침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중앙협의회와 지방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설치근거는 법률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고, 아래 비교표와 같이 중앙협의회와 지방협의회의 심의사항 중 지엽적인 사항의 일부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는 기능에 대해서 재차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⁶⁾.

【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관련 현행 지침 및 개정안 비교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지침」 제3조	개정안 제25조의3제24항
법무부에 설치한 중앙협의회(제1항)	법무부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두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기능(제2조)
1.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법무부장관이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한 외국인 인권 침해 사건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3.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관련된 사안으로서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
4.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중앙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
5.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중앙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6. 그 밖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u>법무부장관이 중앙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u>	4. 그 밖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u>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u>

6) 예를 들어 개정안은 지침이 규정하는 중앙협의회 기능 중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침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사건 조치사항,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항, 지방출입국관서 장이 중앙협의회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을 추가 규정하거나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설치한 협의회(제2항)	
1. 인신매매, 임금 체불 등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 인신매매, 임금 체불 등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이 법에 따른 허가 등에 관한 사항
2. 인도적 사유가 있어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 등에 관한 사항	2. 인도적 사유가 있어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이 법에 따른 허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방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한편,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2년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포함한 소관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⁷⁾⁸⁾.

문 의 처
02)6788-5057

-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포함한 소관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11(존속기한) 외국인보호위원회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8) 개정안은 협의회의 설치근거를 지침에서 법률로 단순 상향규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조직이나 인원 증가 및 예산 추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 증원 및 증액 소요가 존재한다면 법무부는 법률안 심사 시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